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2021. 2.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목 차

I. 지원사업	1
1. 사업개요	2
2.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3
3. 사업추진 절차	5
4. 선정 후 사업추진(집행) 및 관리	6
5. 보조사업의 보고 및 사후관리 등	7
II. 서식 및 참고	9
[서 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서	10
[참고1] 지원 항목 및 기준 세부내용	17
[참고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세부절차	18
[참고3] 문의처	19

I .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저하, 결로·곰팡이 발생 및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실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한국형 뉴딜사업(그린뉴딜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필요

□ 지원사업 주요내용

- (사업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그린리모델링센터)
- (주요내용) 에너지 성능향상, 실내공기질 향상, 효율개선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 포함), 의료시설

* p.3 [2.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

- (신청기간) 3월 이후 별도 공고하여 안내
- (사업기간) 2021년 연내 완료
- (사업규모) 총 2,276억원 (국비기준)

2.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의 공공 건축물 중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이하 “보건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 (이하 “의료시설”)

□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항목)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구 분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필수공사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선택공사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지원 가능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GR 관련 전기공사, 이사비 및 임차비용

* 필수공사 항목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사업신청 및 지원 가능

*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의 세부 적용 기준은 p.18 [참고 1] 참조

- (지원 상한액) 건축물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 지원대상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300만원/3.3m²×보조율
- 단, 소규모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연면적 300m² 미만)인 경우 400만원/3.3m²×보조율

* 총사업비는 건축물대장에 명기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지방비(또는 기관 자부담비)로 구분

○ (지원한도) 신청주체에 따라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특별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의 50%

* 서울 : 서울특별시, 관할 구, 산하 공공기관 / 중앙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공공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단, “서울시 외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제외)

－ (그 외)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의 70%

* 그 외 : 서울시 외 지자체, 관할 시군구, 산하 공공기관

사업비 지원한도	구 분	국비지원금액	국비지원비율
300만원 / 3.3㎡ (연면적 300㎡ 이상)	서울, 중앙, 공공	150만원 / 3.3㎡	50 %
	그 외	210만원 / 3.3㎡	70 %
400만원 / 3.3㎡ (연면적 300㎡ 미만) ※ 소규모건축물	서울, 중앙, 공공	200만원 / 3.3㎡	50 %
	그 외	280만원 / 3.3㎡	70 %

* 지자체 부담분에 대한 광역-기초 간 분담비율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

○ (복합건축물 지원) 여러 용도가 혼재된 경우 사업대상 용도(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단, 원만한 건축계획을 위해서 복합용도 건축물 면적(전용면적) 중 사업대상 용도면적(전용면적) 비율이 50% 이상시 전체건축물을 대상으로 100% 지원가능(50% 미만은 지원불가)

*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명회 자료 p.2 「국비 지원 세부 사항」 항목 참조

○ (임차건축물 지원) 임차한 건축물(준공 후 10년경과)은 임차기간이 2026년 1월 1일 이후까지 계약체결 된 경우 지원가능

－ 사업대상기관이 임차한 건축물이 복합용도인 경우, 임차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며 민간이 사용하는 타 용도 지원불가

○ (국비 활용 가능 범위) ‘21년 사업과 관련된 용역, 공사, 이주비, 기반시설비용 등에 사용 가능

*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명회 자료 p.3 「국비 활용 가능 범위」 항목 참조

□ 신청방법(사업공모 별도 공고)

- (신청절차) 지원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참고 1] 양식을 활용하여 LH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제출
 - 공모 접수 시스템(<https://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
- * 기초지자체는 접수 시 광역지자체의 승인 필요
- ☞ 작성 방법은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사용매뉴얼” 참조
- * 문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담당자 (☎ 031-738-4966, 4967)

□ 기타 안내사항

- ‘21년 사업공모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컨설팅” 희망 건축물을 3월 5일까지 접수 중*
- *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명회 자료 참조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공문 접수

3.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신청) [참고 1]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LH(그린리모델링센터)로 제출
 - (계획 수립·제출) 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 시행한 사전조사 및 컨설팅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그린리모델링 설계, 공사내용 검토 및 사업 계획서 및 관련서류 첨부·제출
- ② (그린리모델링 계획승인) LH(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는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제출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사* 및 선정 후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에 보고
 - * 건축물 용도, 건축물의 노후도 등 기준에 대해서 검토 후 승인
 - (선정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대상인 공공건축물을 관할하는 기관(이하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 ③ (대상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대상기관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결과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기관 → LH → 국토부

④ (국비 교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대상기관의 추진계획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내용을 토대로 국비 교부 결정 및 교부

- 국토교통부 → LH → 사업대상기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신청 및 교부

* <https://www.gosims.go.kr/>

4. 선정 후 사업추진(집행) 및 관리

□ 그린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계약

○ (설계 및 공사계약) 사업대상기관에서 그린리모델링 설계, 공사수행을 위한 설계사·시공사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등 사업대상기관의 여건에 맞게 업체 선정 및 공사 시행

* 필요 시 건축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 자체 시행

□ 사업 추진 및 관리

○ (사업착수) 착수 시 전체 보조금의 80%이내, 준공시 잔액 지급

○ (사업관리) 사업대상기관에서는 그린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설계 및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현황관리·모니터링 시행

○ (사업계획 변경) 설계 및 공사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공공기관은 사업변경 신청서를 LH(그린리모델링센터)로 제출

○ (보고 및 검사) 사업완료(공사 준공)시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

- 사업대상기관 → LH → 국토부

□ 사업 결과

○ (지원항목) 보조금 정산 시 사업대상기관에서는 지원받은 항목에 대한 설계도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함

*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의 세부 적용 기준 [참고 1] 참조

5. 보조사업의 보고 및 사후관리 등

□ 보조사업의 관리

-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대상기관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집행,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이자수익은 반납 조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사업대상기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집행 실적 및 그린리모델링 설계, 공사 현황을 익월 10일 까지 LH 그린리모델링센터장에 제출하여야 함

□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 보조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경**은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대한 변경**) 사업공모 선정 시 수립된 에너지 절감계획이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
 - * 에너지절감률이 경미하게 변경(10% 미만)되고, 변경금액을 사업대상기관이 부담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을 자체처리 가능함
(단, 사업 준공 및 정산보고 시 변경내용은 일괄로 보고)
 - 국비 지원금액의 증액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허**
 - 사업대상기관은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 사업대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사업대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 * 기타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II. 서식 및 참고

서식

지원사업 신청서(인터넷 신청 및 접수)

【붙임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건축물명						접수번호		
유형구분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소유현황	건축물	소유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임대기간: 00.00.00. ~ 00.00.00.)				소유주		
	토지	소유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임대기간: 00.00.00. ~ 00.00.00.)				소유주		
신청기관명			신청기관 유형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주소								
사업 계획	사업진행단계	구상단계 <input type="checkbox"/> 설계발주단계 <input type="checkbox"/> 설계진행단계 <input type="checkbox"/> 시공단계 <input type="checkbox"/>						
	예상사업기간	00.00.00. ~ 00.00.00.						
	예상사업비용	총액	억원	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비율) %	국비	(비율) %	지방비	(비율) %	
	예산확보금액	총액	억원	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비율) %	국비	(비율) %	지방비	(비율) %	
	추경편성여부	편성 <input type="checkbox"/> (추경확정예정일: '21.00.00.) 미편성 <input type="checkbox"/>						
	추경편성계획	있음 <input type="checkbox"/> (편성계획제출일: '21.00.00.) 없음 <input type="checkbox"/>						
그린리모델링 공사범위	필수공사							
	추가공사							
기타필요사항	구조검토 <input type="checkbox"/> 석면검사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input type="checkbox"/> 이주비용 <input type="checkbox"/> 기반시설 공사 <input type="checkbox"/> 기타사항 ()							
건축물 현황	건축면적(m ²)			규모(층수)	지하 층 / 지상 층			
	연면적(m ²)			준공년도				
	복합용도 건축물 여부	대상 <input type="checkbox"/> (사업대상 용도면적(전용)비율: %) 비대상 <input type="checkbox"/>						
	한전고객번호							
	용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사용용도								
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			이메일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00. 00.								
				신청기관명	(직인)			
※ 첨부서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붙임2】

[건축물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 세부계획서

2021. 00. 00.

[신청기관명]

1. 건축물 현황

□ 건축 개요

구 분		내 용
건축물명		
주 소		
연면적/규모(층수)		m ² / 층
용도		(현재용도 및 변경 예정용도 모두 기입)
구조형식		
주요 감재 종류	지붕	
	외부	
	내부	
	창호	
준공일자		
경과년수		
예상 사업비		
개·보수 (리모델링)사항		

□ 위치도

시설물의 위치가 사진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사진1] 전경사진

시설물 전경 등에 대하여 사진으로 충분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사진2] 세부 현황

시설물 내부 현황이 사진으로 충분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사업 현황

□ 지원사업 신청배경

□ 사업의 진행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 사업의 진행경과:

- 공모 신청 당시 이미 설계, 공사 등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작성

* 착공 및 준공 계획:

- 연내 착공 또는 준공 불가능한 경우 사유 적시

3. 그린리모델링 계획

※ 그린리모델링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그린리모델링 기술 적용 계획(안)>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물량	공사비 (천원)	비고
필수 공사	벽체	·	·			
	지붕	·	·			
	바닥난방	·	·			
	창호	·	·			
	문	·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			
	고효율 냉난방장치	·	·			
	고효율보일러 (콘덴싱)	·	·			
	조명(LED)	·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	·			
	BEMS(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	·			
선택 공사	일사조절장치	·	·			
	Cool Roof (쿨루프)	·	·			
	순간온수기					
	스마트 에어샤워					
추가 지원 가능 공사	기존공사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석면 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 교체에 따른 공사					
전기용량증설 등 GR 관련 전기공사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의 해당공종별로 개선 전·후 사항 입력

※ 기재내용에 따라 별지로 추가 작성 가능

【붙임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수집 · 이용 목적

-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모집 공모절차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필요한 최소 정보를 수집

2. 수집 · 이용 항목

- 신청인의 이름,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3. 보유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완료 시까지이며, 보유기간은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4.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부 시 공모절차 추진이 불가하여 지원사업 응모가 제한됨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021년 00월 00일

성명 : (인)

참고 1

지원 항목 및 기준 세부내용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필수 공사	고성능 창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세트 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의 '창 및 문' 기준 적용
	고기밀성 단열문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것, 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의 '창 및 문' 기준 적용
	내·외부 단열보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적용 (벽, 바닥, 지붕) * 외단열시 열교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고정장치 사용 * 화재안전을 위해 준불연재료에 상응하는 재료 적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 이상, 난방시 15 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9% 이상, 난방시 71% 이상 제품 적용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열회수 환기장치 기준 적용, 또는 KS B 6879 참조)
	고효율 냉·난방장치	보일러, 냉난방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
	고효율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 사용 * 모듈은 정격효율 18%이상 인증제품 * 접속함 및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는 KS인증제품 *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의 품질기준(KS C 8561 또는 8562 일부준용)에 따라 '발전성능' 및 '내구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 제출 * 설치완료 시 설치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내용 참조
BEMS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건물에너지사용량, 월별사용량 계측 가능 제품)	
선택 공사	일사조절장치	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 루버, 어닝 등
	Cool Roof (차열도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시험방법 ASTM C1549, E903, E1918)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65 이상인 도료에 한함
	순간온수기	-
	스마트에어샤워	-
기타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 지원 가능 공사	건축분야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석면 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GR관련 부대공사
	기계분야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분야	전기용량증설 등 관련 비용	
이주비용(이사 및 임차비)		

- * 위 항목에 준하는 기준 적용 권장하며, 항목 중 3년 이내 개선 이력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공사 완료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한 인증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 내용연수(조달청 고시)를 충족하지 않은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대상 공사 중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참고 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세부절차

사업 단계	'21년 사업절차	주관기관	주요 시점	비고
I 단계 사업 대상 선정	'21년 GR 사업설명회 (대상건축물, 절차, 일정안내)	국토부 및 LH, 사업대상기관	2월	
	사전조사 및 컨설팅 대상(GR컨설팅대상) 접수	사업대상기관→국토부 및 LH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신청	2월	
	국토부 '21년 GR사업 공고	국토부	2월	
	GR컨설팅 대상 사전조사 및 컨설팅 착수	LH & 컨설팅업체	2월	LH 사업관리
	사업대상기관과 사업계획 컨설팅 (지자체인 경우 광역까지 협의)	LH & 컨설팅업체 & 사업대상기관	3월	(현황 및 현안처리)
	국토부 '21년 GR사업 공모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 안내)	국토부	4월	
	사업 신청서 제출	사업대상기관→LH 및 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신청	4월	
사업대상 심의 및 선정·통보 (사업계획 최종확정)	LH 및 국토부→GR선정기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통보	4월		
II 단계 국비 신청 및 교부	국비 교부신청	GR선정기관→LH→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신청	4월,5월	LH 사업관리
	국비 교부	국토부→LH→GR선정기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교부	4월,5월	(현황 및 현안처리)
III 단계 사업 수행 관리 (사업 지구별)	설계 용역 발주등	GR선정기관	5월~6월	
	설 계	GR선정기관	6월~7월	국토안전 관리원
	공사 발주	GR선정기관	7월~8월	사업관리
	착공 및 보고	GR선정기관→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보고	9월	(현황 및 현안처리)
	준공 및 완료 보고	GR선정기관→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보고	~ 12월	
IV 단계 사업 성과 관리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GR선정기관→국토부&LH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보고		
	성과 평가	LH		

참고 3**문의처**

구분	연락처
공모관련 문의 (사업계획)	(국토부 담당자) 이채훈 사무관, 안슬아 주무관 044-201-4098, 3770 (LH 담당자) 서희영 차장, 우수진 과장, 서동혁 대리 031-738-4965, 4966, 4967
지원사업 신청 및 시스템 문의	(LH 담당자) 서희영 차장, 우수진 과장, 서동혁 대리 031-738-4965, 4966, 4967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LH 담당자) 박범석 과장, 김태현 주임 031-738-4964, 4963